

2023년 2분기 노사협의회 회의록

회의일시	2023. 6. 21.(수) 15:00
회의장소	본사 6층 이사회 회의실
보고사항	(제1호) 2023년 2분기 인력현황 및 채용계획 (제2호) 2023년 2분기 조직운영 (제3호) 2022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협의사항	(제1호) 지사 안전관리자의 중기인력운영계획 반영 검토 (제2호) 제주본부 신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민원 대응 검토 (제3호) 외부 홈페이지 전화번호 공개방식 검토 (제4호) 임신·출산 관련 특별휴가 수정·신설의 건 (제5호) 가족돌봄휴가 제도개선 요청 (제6호) 복지포인트(카드) 이용제도 검토(안) (제7호) 당직근무비 지급주기 단축 요청

	구 분	소 속	성 명	참 석
참석현황	사용자측	대표위원	정 동 희	○
		위 원	양 동 우	○
		위 원	김 홍 근	-
		위 원	양 성 배	○
		위 원	송 석 돈	○
	근로자측	대표위원	곽 지 섭	○
		위 원	이 금 진	○
		위 원	공 병 조	○
		위 원	정 준 명	○
		위 원	이 용 익	○

붙임: 회의자료 요약 1부.

(붙임)

노사협의회 회의내용 요약

보고안건
(제1호)

2023년 2분기 인력 및 채용현황

- 사용자측은 2023. 6. 30. 기준 인력현황은 현원 491.5명이며, 신규채용은 6~7월 중 공고, 8월 채용 완료 계획임을 보고

보고안건
(제2호)

2023년 2분기 조직운영

- 사용자측은 2023년 2분기 정원은 511명('23년 1분기 대비 변동없음)임을 보고

보고안건
(제3호)

2022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 사용자측은 2022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는 총수익 1,214억원, 총비용 1,2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은 14억원임을 보고

협의안건
(제1호)

지사 안전관리자의 중기인력운영계획 반영 검토

- 근로자측은 효율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위해 각 지사에 전담 안전관리자 배치 요청
- 사용자측은 현재 지사 안전관리자 필요성 미검토 및 중기인력운영계획 미반영임을 보고
- 협의결과: 차년도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 시 필요성 검토 후 추진

협의안건
(제2호)

제주본부 신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민원 대응 검토

- 근로자측은 제주본부 신재생에너지 출력제어 관련 민원전화 응대를 본부 전담인력이 아닌 전사 차원에서 대응 요청
- 사용자측은 실무부서의 자구 대응노력 및 상호 협업방안 발굴이 타당하다는 입장
- 협의결과: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보상 법제화 여부와 관계 없이, 하반기 조직개편 시 필요성 검토 후 추진

협의안건
(제3호)

외부 홈페이지 전화번호 공개방식 검토

- 근로자측은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해킹 등 정보 유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홈페이지 개인정보 공개수준 조정 요청
- 사용자측은 성명 검색 기능은 이미 삭제했으며, 고객 니즈 수준 파악 및 관련부서 의견 조율 후 공개수준 결정 입장
- 협의결과: 팀별 대표번호 공개 등은 타사 사례 조사, 관련부서 및 직원 의견 수렴 후 재논의

협의안건
(제4호)

임신·출산 관련 특별휴가 수정·신설의 건

- 근로자측은 난임치료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수정(신설) 요청
- 사용자측은 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및 증빙 시스템 마련 후 제도 개선 입장
- 협의결과: 하반기 중 취업규칙 개정, 시스템 개선 및 가이드라인 마련하여 추진

협의안건
(제5호)

가족돌봄휴가 제도개선 요청

- 근로자측은 가족돌봄휴가 유급 부여(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및 가족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직기간에서 제외 요청
- 사용자측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가족돌봄휴가 유급 부여(연간 2~3일)는 가능하나, 관련 법령상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기간에 포함된다는 입장
- 협의결과: 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고려하여 가족돌봄휴가 일부 유급 부여를 위해, 하반기 중 취업규칙 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하여 추진

협의안건
(제6호)

복지포인트(카드) 이용제도 검토(안)

- 근로자측은 휴·정직자도 전체 복지포인트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요청
- 사용자측은 복지포인트 환수 지급기준 마련 및 기금 운영의 안정성과 재직중인 직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 입장
- 협의결과: 복지제도 개선 시 복지포인트 운영 방법 등 추가 검토 예정

협의안건
(제7호)

당직근무비 지급주기 단축 요청

- 근로자측은 당직근무비 지급주기를 매주/격주 단위로 단축하고, 지급기한을 명확히 하도록 요청
- 사용자측은 당직근무비 지급시기를 월별 일괄지급하되, 익월 10일 이내 지급하도록 개선 추진
- 협의결과: 익월 10일 이내 지급하도록 당직 및 상황근무요령 개정 추진